

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-1번지 / 전화 (02) 3707-8233~4 / 전송 3707-8249
 처리부서:주택재개발과(중구 석소문동 서소문별관 2동 203호)담당:김 원철,계장:오·천균

문서번호 주제58533-2138

시행일자 1997. 10. . (년)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년	
주택재개발과장	전 결	
재개발 1 계장		협조통제관심사필 법무담당관 (고시안심사)
기안	김 원 철	협조
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

1. 중구 주택58531-2138(97.10.10)호와 관련임.

2. 서울시고시 제1996-75호(96. 3.29)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된 우리시 중구 신당4동 1지구에 대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지구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(권한의 위임)의 규정에 따라 별첨(고시안)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

첨부 1. 고시안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도면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총 무 처 장 관

참조 : 법 무 담 당 관

제 목 : 관보개재 의뢰

1. 우리시 신당4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개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재구분 : 고 시

나. 개재건명 :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.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: 주택관리과장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

1. 우리시 중구 신당4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(권한의위임)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1. 고시안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4 안)

수신 : 중구청장

참조 : 주택과장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통보

1. 중구 주택58531-2138(97.10.10)호와 관련임.

2. 귀구 신당4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구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할 것이며

3. 관계부서에도 통보하여 도시계획업무 처리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바람.

첨부 1. 고시안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통보

1. 우리시 중구 신당4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지정하고

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고시안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도면 1부. 끝.

주 택 재 개 발 과 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, 지적과.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326호

고시심사	1997.10.24	제 334 호
담당자	관계심사대장	사무담당관
B	A	A

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75호(96. 3.29)로 지구지정된 중구 신당4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을 결정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중구 주택과·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(이하...) (...)

1997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결정조서

지구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기정(m ²)	변경(m ²)	증·감	
신당4동1주거 환경개선지구	중구 신당동 330번지 일대	2,905	2,902	감) 3	구역변경없는 단순면적정정

나. 변경사유 : 지구내 사업시행면적 계산착오로 면적감소.

나. 관계도면 : 생략(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결정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중구 주택과·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)

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입안조서

1. 지구현황

- 지구명 : 신당4동1주거환경개선지구
- 위치 : 중구 신당동 330번지 일대
- 면적 : 2,902m²
-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

2. 추진경위

- '96. 3.29 : 지구지정(서고시 제1996-75호)

3. 변경내용

- 지구변경 입안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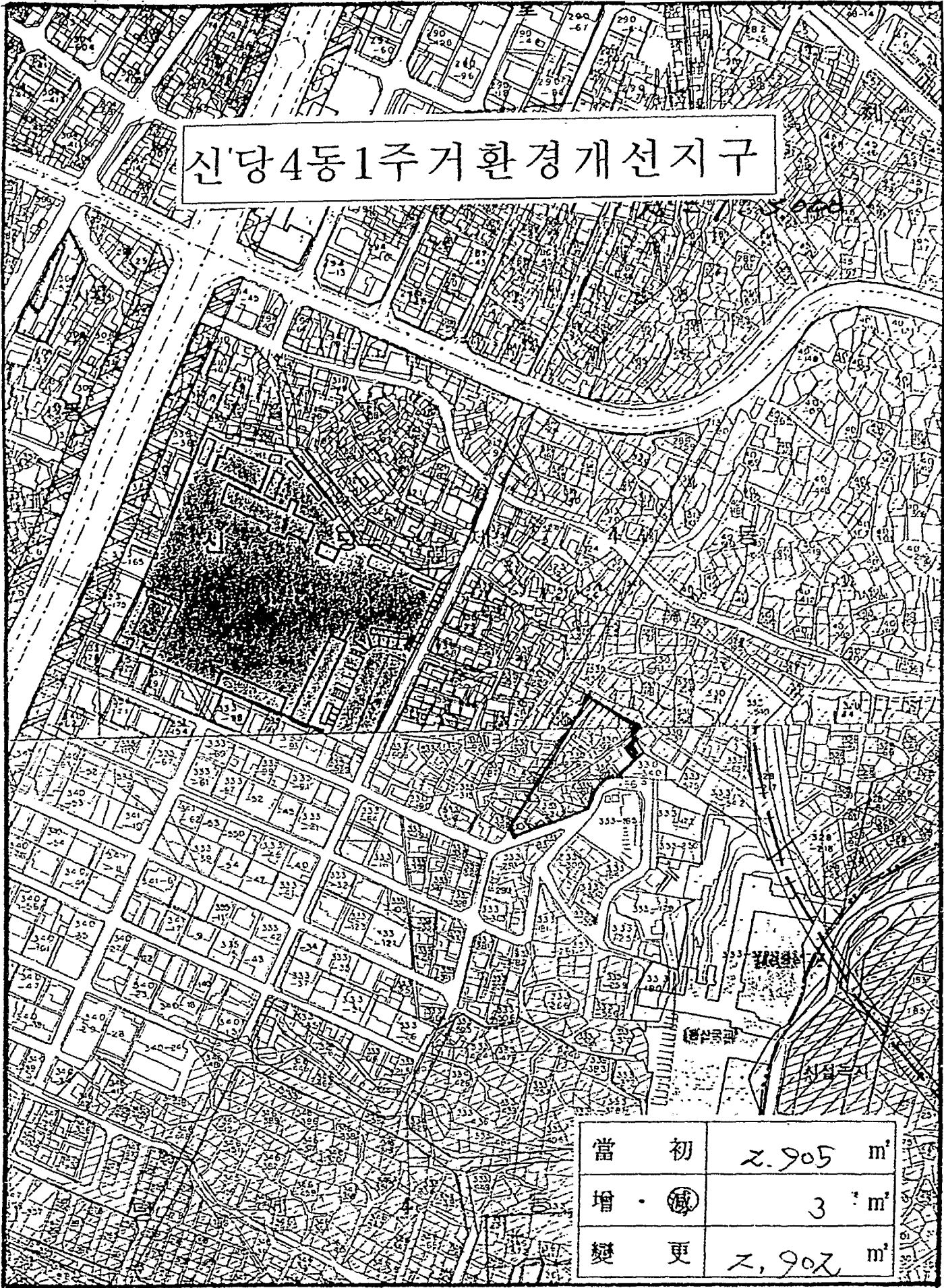
지구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기정(m ²)	변경(m ²)	증·감	
신당4동1주거 환경개선지구	중구 신당동 330번지 일대	2,905	2,902	감) 3	구역변경없는 단순면적정정

- 변경사유 : 지구내 사업시행면적 계산착오로 면적감소.

첨부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도 1부.

※ 근거 : 중구 주택58531-2138(97.10.10)

신당4동1주거환경개선지구



當 初	2,905 m ²
增 · 減	3 m ²
變 更	2,902 m ²